

답 변 서

사 건 2019재나50 기타(금전)

[담당재판부:제18민사부(다)]

원 고 임 그 루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596-3 다세대주택 A동 103호

연락처 010-2878-2177

피 고 케이티 노동조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

대표자 위원장 김 해 관

인격 권리가 무시당하면 사회적약자라도 법원 판결로서 보호하는 법원이 되기를 바라며 이 답변서를 제출 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제22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1. 처음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 43290 ”조합활동 피해자관련 취소결정 철회” 소를 제기했습니다. 진행 중 노동조합에 “신분보장기금 사용내역”을 알려고 사실조회신청서 냈습니다. ⇒ 성남민사법원(2007가합

3175)으로 이송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조(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①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 행정 법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건을 관할권이 없는 민사법원으로 이송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명시되어 있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묵살 했 습니다.

2. 2007가합3175판결문 "이유 2. 이 사건 적법 여부의 판단 나." 부분에 "법률에 명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이유로 각하판결 이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11조(관할위반 주장의 금지)

당사자는 항소심에서 제1심 법원의 관할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전속관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행정법원 때처럼 '청구취지' 는 "조합활동 피해자관련 취소결정 철회"이며 신분보장기금 사실조회서도 다시 냈습니다. 변론 때 판사님은 피고에게 신분보장기금 사실조회 "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게 사실조회서 통보 없었습니다,

민사법원에서 행정법원 때 주장 그대로 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 411조" 에 의하면 전속관할 위반은 언제나 이송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각하 판결이 아니라 법률에 보장되어 있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법원으로 이송 판결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맺음

①. 해당되는 법 조항

헌법 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서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9조(사법행정사무)

③ 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① 확정판결(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기판력)을 가진다.

② 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419조(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이송)

관할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2007가합3175판결문에 각하 이유로 신분보장 기금 사실조회 한 것 통보 없는 설명이 없어서 이해 안 되었습니다. 또 관할법원이 어디 라는 내용도 없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에는 판결문에는 “주문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2007가합3175판결문은 관할법원이 어디라고 알고 있는 법 전문가들은 알 수 있어도 법을 몰라서 법률공단에서 상담하여 소장을 냈었고 민사 법원에서도 진실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여 행정법원 때처럼 주장했는데 각하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서 다시 법률공단에 가서 상담 했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았 습니다. 다른 곳 법률상담 하는 변호사에게 상담 했습니다. 이때도 가르쳐 주지 않았 습니다. 그 당시는 각하 이유를 몰라 답답했습니다.

②. 무료로 해준다는 변호사님에게 처음 사건 번호는 알아야 한다며 연락 했을 때 소장을 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인쇄한 것 5장. 첨부) “청구취지”는 “1. 원고에 대한 2003. 7. 15. 자 해고는 조합활동 으로 인하여 신분 상 불이익이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신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 을 확인한다.”입니다.

☞. 제가 주장한 ”조합활동 피해자관련 취소결정 철회” 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천만원 달라고 한 것은 제 의견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피고는 인터넷 노조게시판에 불량 글을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하는데 “징계사유통보서”에 없는 내용입니다. “○.징계사유 통보서 : 갑 제12 호증” 제출 안했습니다. “○.다른 분들의 (인터넷게시내용) : 갑 제14호 증 총52장” 보면 심한 것은 모른 척 하고 경미한 것도 다 포함하여 저 혼자에게만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장 안 했습니다. (이런 걸 몰랐습니다. 이유는 원고의 준비서면 참고) 또, 항소 한다고 해도 안한다고 했습니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법률용어사전에 있는 ‘착오’는

“행위가 법률로서 금지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허용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을 포함)을 말하며”

법률용어사전에 있는 ‘강박’이란

“강박행위의 방법이나 위협의 종류는 사람이 공포를 야기시키는 것이면 어떠한 것이라도 무방하다.” 고 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에 해당되어 알지 못했고 제 의사가 아닌 것은 취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청구취지 변경신청” 합니다.

◎.결론

상식은 법규를 탐지하고 해석하는 것은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것이고, 원고는 법규를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증명하면 법원은 사회정의를 보호하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판결에 중대한 흠결이 있어 재판이 적정하지 못했고 당사자의 권리 구제라는 구체적 정의에도 반했습니다. 판결로서 사회정의를 보호하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할법원인 행정법원으로 이송되어 진실이 밝혀지기 원합니다. 혹시 민사소송 절차법으로 안 된다면 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절차법을 개정해서라도 이송되기 원합니다. 헌법 제108조, 법원조직법 제9조(사법행정사무)

첨부 : 성남지원 2009가합9702 소장 5장.

2019. 11. .

재심원고 임 그 루

고등법원 귀중